[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50호]

202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사업 공고

지역 문화콘텐츠산업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2022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Culture Research Center)」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 혁명 및 급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시장에서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제주도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기반 마련

○ 제주기반 문화콘텐츠 기업들에게 R&D관련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2022년 협약일 ~ 2023년 12월(2개년)

※ 당해년 사업기간: 2022년 협약일 ~ 2022년 12월(1차년도)

- 문화기술 연구개발(R&D)기획 지원사업: : 2022년 협약일 ~ 2022년 12월(1개년)

○ 지원내용

가.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지원(A유형)

CRC	2022년(1년차)		2023년(2년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문화기술 실증 및 비즈니스모델(사업화) 구축**
지원 목표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R&D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핵심기술(콘텐츠)를 개발을 촉진 시켜, 기업 신 성장동력 확보 유도		
지원 과제	3개 과제		
지원금	162백만원(과제당)	⇨	162백만원(과제당)

※ 2023년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획 지원사업(B유형)

CRC	2022년
	문화 기술 연구개발(R&D) - 기획개발 지원
지원 목표	제주도내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R&D기획 촉진**(첫걸음 지원)**
지원 과제	3개 과제
지원금	20백만원(과제당)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본사를 제주 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상용화기술 및 콘텐츠개발·제작이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문화콘텐츠 기술 관련 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융복합 등 과 관련된 기술

※ 문화기술(CT)

[참조] 제3차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2019)

문화적 요소(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법・기술을 의미

* 문화기술은「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제4항에 따른 "융합연구개발"(新기술 상호간, 新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의 핵심 영역에 해당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2022. 04. 08.(금) ~ 4. 27.(수)

□ 접수기간: 2022. 04. 25(월) ~ 4. 27(수) 18:00까지 (3일간)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시간 엄수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지정된 양식과 안내서에 따라 작성, PDF로 제출

○ 발송주소: culture@ofjeju.kr (접수 후 1일 이내 접수확인 메일발송)

※ 세부접수방법은 사업안내서 참조

3.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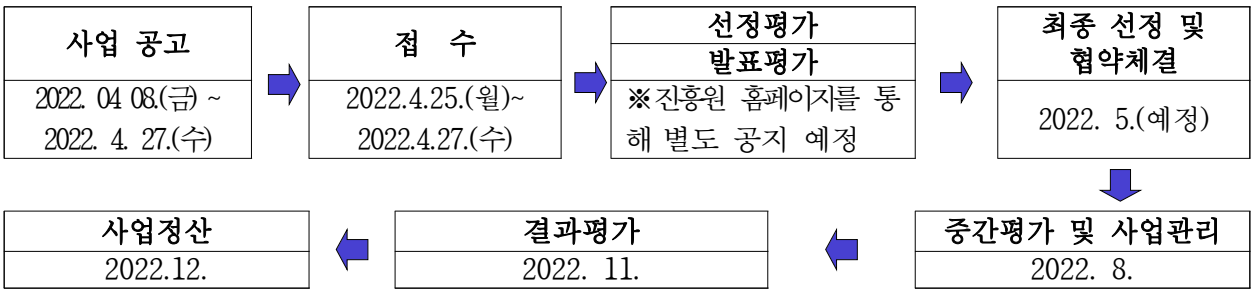

4. 지원상세내용

가.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A유형)

□ 사업개요

○ 총지원기간: 2022. ~ 2023. 12 (2개년)

○ 당해지원(2022년)기간: 협약일로부터 ~ 22. 11.15

※ 지원기간은 협약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지원규모: 972,000천원(3개과제, 2개년, 건당 162,000천원)

○ 당해연도 지원규모: 486,000천원(3개과제, 건당 162,000천원)

※ 지원금은 과제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가능

○ 지원과제: 3개 과제

○ 지원내용: 문화콘텐츠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외 관련 비용 지원

※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인건비 계상 불가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에 개발 완료, 실증(적용)이 가능한 기술

※ 기업이 제출한 과제계획서에 작성된 년도별 목표치

(단, 심사를 통해 목표치의 적설성과 실현가능성 중점적 검토)

- 지원금 기준 10% 이상 자부담 필수(현금만 인정)
- 2022년 결과평가를 통해 2023년 연속지원여부 결정
- 필수조건: 신규 인력채용 매년 1명이상 필수 채용

※ 신규인력채용 기준
- 신규채용인력은 본 연구과제 참여율 100% 유지
- 2022년 1월 1일 시점부터의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은 4대보험 가입/주5일근무(52시간)만 인정
  -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근로 계약서 작성 등)
- 협약종료일 해당월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 불인정(기 지급 금액 포함)
-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노력(채용 공고 게재, 면접 실시 등)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2023년 신규채용인력은 2022년 신규채용인력 중복 불인정
- 협약이후 3개월이내에 신규채용을 해야 하며, 채용이 늦어지는 경우 사유에 대해 소명

○ 지원범위

사업비 사용 기준	비고
·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인건비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장비대여 및 전문가활용비 · 기타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자산성 물품구입의 경우 자부담 예산내에서 구입 가능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형태: 예산편성은 지원범위 사용기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나.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획개발 지원사업(B유형-첫걸음지원)

□ 사업개요

○ 총지원기간: 22. 협약일. ~ 22. 11. 15
○ 지원규모: 60,000천원(단년도 지원, 건당 20,000천원)
○ 지원과제: 3개과제
○ 지원분야: 문화콘텐츠 기술 관련 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융복합 등 과 관련된 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제주도내 기업이 문화산업관련 첫 연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에 대한 기획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사업기간내 최종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지원범위

사업비 사용 기준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컨설팅 등) 활용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구입비(예, 동향조사보고서 등) ·기타 연구개발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매칭 필수

※ 전문가활용비는 개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지급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경영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업처럼 관련 종목이 있어야함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형태: 예산편성은 지원범위 사용기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선정이후, 향후 A유형(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에 지원시 가산점 부가

5.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발표평가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자료: 과제계획서와 일치하는 발표용(PT) 자료

□ 발 표 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책임자

□ 선정기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연구계획 (5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25)	o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 o 연구개발기관 업종과 연계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25)	o 추진전략 · 방법의 창의성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연구역량 (20)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역량(20)	o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성과활용 (3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30)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실현가능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 종합평점이 동일 한 경우, 연구계획, 성과활용, 연구역량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최종 선정된 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정 (종합점수 60점이상)

※ 평가방법은 접수상황과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우대가점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점	사회적기업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과제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근로자 수가 13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기타 (최대 2점)	자부담매칭비율이 15%~20% 미만인 경우	1점	자부담매칭 확약서 제출 (기업제출)
	자부담매칭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2점	

6. 제출서류

□ 제출형식: PDF로 제출(단, 연구개발계획서는 한글(HWP)로 추가제출)

□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A유형)

No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A_01_기업명_연구개발계획서 ○ **한글(.hwp) 파일 추가제출** ○ 사업추진기간은 : 22.05.01~22.11.15로 작성
2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A_02_기업명_사업자부담금 확약서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파일명: A_03_기업명_개인정보이용동의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A_04_기업명_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5	위탁사업 계획서	○ 해당기업만 제출 ○ 파일명: A_05_위탁사업계획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파일명: A_06_기업명_완납증명서
7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0~2021년도) ○ 파일명: A_07_기업명_표준재무제표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설립3년미만은 제외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 파일명: A_08_기업명_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각각제출)
9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 파일명: A_09_기업명_4대보험
10	선택 제출 자료	○ 연구과제관련 주요 참고자료(실적증빙, 보유 지적재산권, 업무협약서 등) ○ 파일명: A_10_기업명_선택제출자료
11	우대가점증빙자료	○ 파일명: A_11_기업명_우대가점증빙자료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획 개발지원 사업(B유형)

No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B_01_기업명_연구개발 계획서 ○ 한글(.hwp) 파일로 추가제출 ○ 사업추진기간은 : 22.05.01~22.10.30로 작성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파일명: B_02_기업명_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B_03_기업명_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 파일명: B_04_기업명_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각각제출)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파일명: B_05_기업명_완납증명서
6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0~2021년도) ○ 파일명: B_06_기업명_표준재무제표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설립3년미만은 제외
7	선택 제출 자료	○ 연구과제관련 주요 참고자료(실적증빙, 보유지적재산권, 업무협약서 등) ○ 파일명: B_07_기업명_선택제출자료
8	우대가점증빙자료	○ 파일명: B_08_기업명_우대가점증빙자료

7. 공통부분

□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은 지원불가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타 지원사업 과제와 동일하거나 일부 중복인 경우 지원 불가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총 연구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지급증권 제출

※ 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 부담, 사업비로 집행 불가

□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A유형)의 경우 자부담 10%는 현금으로 매칭해야 하며, 자부담의 경우 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 집행기준이 없을 경우, 진흥원의 집행기준에 따름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기업부담금 포함)

□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A유형)의 경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연단위로 협약체결

※ 연단위 협약종료이후, 결과평가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급방법은 협약체결 후 1차(40%) 지급하고 중간평가 이후 2차(60%) 지원금 지급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진행

□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 이후 7일 안에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회계검토비용은 사업비에서 산정 가능

□ 향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내용변경 및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사업종료 이후에도 선정기업은 연구개발성과관련 조사를 위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신청시 공고문과 사업안내서에 따라 서류 제출 필수

8. 기술료 납부

□ 기술료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A유형)에만 적용

□ 기술료의 세부사항은 기술료관련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예정

□ 기술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공지

9. 결과물의 활용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하며,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최(관)하는 행사, 홍보 등에 활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보유 시설운영에 활용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 발간 등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 최종 결과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명기 -결과물이라 함은 추후, 사업화시 홍보.마케팅까지도 포함한다.

□ 주관(참여)기업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재)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재)제주영상·문화 업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10. 결과물의 소유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자재, 장비,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기관, 위탁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 장비 등 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협약 내용에 따름 (단, 사업비 편성기준에 한정)

11. 신청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이미 개발된 기술
- □ 신청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과체책임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의 부도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미납중인 경우
- □ 신청기업의 선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 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과제인 경우

12. 유의사항

-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를 수정할 수 없고 반환불가
-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금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 1개의 기업당 1개 과제계획서 지원가능(교차지원불가)
- □ 문화기술 연구개발(R&D)의 경우 신청대상기업은 과제에 대한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해야함

□ 문화기술 연구개발(R&D)의 경우 사업연도별 목표치를 세부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하며 2년차 사업연도에는 기술의 시연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지원사업별 사업안내서 숙지)

□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일부가능)

□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해당사업만)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함

○ 임금체불금지

-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 및 용역비 등 과제수행 제반비용을 체불 금지

○ 최종공고문 및 내용은 사업안내서를 기준으로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기준에 따른다.

13. 문의

○ (재)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김영현 책임연구원

☎ Tel : 064) 735-0628 / ✉ E-mail : culture@ofjeju.kr